

직무발명보상제도(III)

목차

I.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3.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직무발명 관련규정
1. 직무발명제도의 배경	4.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1. 특허법
2.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	IV.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2. 발명진흥법
3.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보상의 종류	3. 발명진흥법시행령
II. 직무발명의 개념과 요건	2.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보상금 청구권)의 성격	4. 근로복지기본법
1. 직무발명의 개념	3. 보상액의 결정기준	5. 근로자참여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직무발명의 요건	4. 보상금의 산정방법	6.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3. 대학교수의 발명	V.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7.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4. 퇴직후의 발명	1. 필요성	8. 기술이전촉진법
III. 직무발명의 효과	2.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9.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1. 개설	3. 직무발명의 승계절차	(그밖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호 시음호)
2. 직무발명의 귀속에 관한 이론	4. 직무발명의 평가	

III. 직무발명의 효과

1. 개설

발명에는 발명자(종업원)의 창의적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직무발명은 개인발명과 달리 발명자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발명자에 대한 보수지급, 연구설비 제공, 연구비 지원 등의 도움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직무발명의 효과를 논함에 있어서는 발명에 대한 두 공헌자인 사용자와 발명자간의 조화로운 이익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발명자에게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그러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켰을 경우 등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인정하는 한편,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 등을 인정하여 양자의 이익균형을 꾀하고 있다.

2. 직무발명의 귀속에 관한 이론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發明者主義

발명자주의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발명자에 귀속된다고 보는 주의이다. 현행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허법 및 독일의 '종업원의 발명에 관한 법률'이 이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성문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의해 이 원칙이 지켜지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1977년 이전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였으나 1977년 특허법 전면개정시 사용자주의로 대 전환을 하였다.

나. 使用者主義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연구시설과 자금을 지원한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주의이다. 영국은 1977년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서 명문으로 이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일본은 1909년(明治 42年) 구 특허법에서 이 원칙을 채택하였다가 1921年(大正 10年) 특허법 개정시 발명자주의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가. 종업원의 권리

(1)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으로부터 특허 등록시까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념으로 특허법 제33조 및 제39조에 따라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종업원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할 수 있으며(특허법 제37조), 특허권을 취득한 후 권리행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특허법 제37조 및

제99조)

(2)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보상금청구권)

종업원은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원지취득하지만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실시시키거나 사용자를 위하여 권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업은 사용자(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보상금청구권)를 가진다.

나. 종업원의 의무

(1) 협력의무

종업원등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을 했을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으며, 특허출원 및 등록시 또는 특허권의 실시하거나 처분시 직무발명에 관한 기술사항을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2) 비밀유지의무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특허출원하였을 경우 종업원등은 출원시까지 그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발명진흥원 제12조),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는 사용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발명진흥법 제38조).

4.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가. 사용자의 권리

(1)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이 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경우 통상실시권을 취득한다. 이때의 통상실시권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실시권으로서 무상이며, 실시범위에 제한이 없고 당해 특허권의 소멸시까지 유효한 통상실시권이다.

(2) 승계취득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권리

사용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취득할 수 있고 종업원이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취득할 경우 특허 출원전일 때에는 사용자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특허출원후에는 출원인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특허법 제38조). 이 경우 사후의 문제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업원 등으로부터 양도증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으며, 특허권의 승계취득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특허법 제101조).

나.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등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취득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종업원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종업원등의 정당한 보상을 지급 받을 권리는 임금채권과 구별되는 일종의 채권적 권리이므로 발명을 한 종업원이 타부서로 전출되거나 자의로 퇴직한 경우에도 사용자등은 보상을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등록 여부

일반적으로 통상실시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

건으로 등록을 해야하지만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 실시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권을 주장할 수 있다.(특허법 제118조 제2항)

♣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자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는 종업원이 당해 직무발명을 완성할 당시의 사용자이고, 그에 따른 특허권의 등록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등록 당시의 사용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7도 516)

♣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의 범위

종업원의 직무고안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의 범위는 실용신안권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物의 사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物의 사용외에 그 제조, 양도, 대여,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도 포함된다.(일본 동경고판 1985. 9. 25)

♣ 종업원이 타인과 공동으로 한 발명의 승계취득

종업원이 타인(자연인 또는 다른회사의 종업원)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은 공유로 되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고(특허법 제37조 제3항, 특허법 제99조), 사용자등은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에 당해 종업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 가지게 된다.(발명진흥법 제9조)

♣ 사용자가 권리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 기간(4개월)이내에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서면으로 그 출원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직무발명을 자유발명으로 간주하고 있다(발명진흥법 제11조). 이 경우 사용자측이나 종업원측에서 권리승계 시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권리승계 시점(예를 들면, 발명의 신고일 또는 기업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개최일)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유발명으로 간주된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를 받았을 경우 사용자는 특허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법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으로부터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에 대한 승계취득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승계취득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발명은 직무발명에 한한다.

즉 직무와 무관한 종업원의 자유발명이나 사용자의 업무범위에는 속하지만 종업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와 무관한 발명은 승계취득할 수 없고, 이러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당연히 무효이다(특허법 제33조 제3항).

그러나 유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유효하다. 그 이유는 통상실시권은 독점적 권리가 아니며, 유상의 통상실시권은 특허법 제102조에 의하여 당연하기 때문이다.

♣ 특허(실용신안)을 받을 권리의 양도없이 사용자가 한 출원의 효과

실용신안법은 발명자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직무발명에 의한 실용신안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그 실용신안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미리 발명자인 종업원으로부터 실용신안을 받을 권리를 양도받아야 한다.(대판 91후1113)

♣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에 대한 사용자등의 적법성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무효라는 규정은 사용자에 대하여 약한 보호를 제공하는데 반하여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발명자의 권리보호를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종업원이 발명을 한 이후의 양도행위까지 금지한 규정은 아니므로 종업원이 한 양도행위는 유효하다.(대판 76다 2822)

♣ 발명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한 후 퇴사한 경우의 권리귀속

■ 계약 또는 근무규정 등에 특허권의 사용자 귀속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그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무상의 법정 통상실시권만을 가진다.

■ 계약 또는 근무규정 등에 특허권의 사용자 귀속에 대하여 정한 경우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당연히 가지고, 종업원에 대하여 계약 불이행 또는 근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계약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직무발명 관련규정

6.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1972. 12. 14 대통령령 제 6397호

전문개정 1999. 6. 30 대통령령 제 16451호

2002. 7. 1 대통령령 제 17657호

제1조 (목적) 이영은 특허법 제39조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기관의 장"이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국유특허권"이라 함은 이 영에 의하여 국가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4.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국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라 함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의 2 (적용제외) 이 영의 규정은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업무의 관장) ①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및 국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4. 국유특허권의 활용촉진

②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2.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승계발명의 국내·외 특허출원

3.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관리

제4조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① 국가는 법 제39조 제2항의 본문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국가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제5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5조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해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명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승계발명의 출원) ① 발명기관의 장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의 출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발명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발명자의 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자기와 같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특허권의 등록)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 특허사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특허권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 : 대한민국
2. 관리청 : 특허청장
3. 승계청 : 발명기관의 장

제10조 (처분의 원칙) ① 국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국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농어민의 소득증대, 수출증진 기타 국가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의 장(발명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③ 국가기관의 장이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실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처분의 방법등) ① 국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국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국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의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을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의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에 필요한 국유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
7.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국유특허권의 처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의견청취등) 특허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특허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무상실시의 기간, 무상실시의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

어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국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특허권등록전의 처분)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처분결과와 통지) ① 특허청장이 국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이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 (처분대금의 처리) 국유특허권 및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특허관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6조 (등록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처분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처분수입금의 30/100

2.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처분수입금-1,000만원)×20/100+300만원

3.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처분수입금-5,000만원)×10/100+1,100만원

②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기관포상금)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포상금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100만원

2.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500만원

3. 처분수입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

제19조 (보상금등의 지급) ①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은 특허관리특별회계예산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국유특허권으로 등록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2.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보상금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포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3.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 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상금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발명기관의 장이 받은

기관포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발명자등의 의무) ①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발명기관에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직무발명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 ① 이 영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의장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에 매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30만원, 의장권은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3조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등에 관한 준용) 제10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및 외국에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승계출원의 국가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이 가

승계하여 출원한 공무원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승계여부를 결정하여 제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가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한 공무원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률 제5577호 실용신안법개정법을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및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중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7.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정 1973. 5. 17 상공부령 제384호

전문개정 1999. 7. 1 산업자원부령 제72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발명의 신고) ①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영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의 요약서

② 제1항 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의 업무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당해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기재할 것
 2. 발명자의 직무 : 소속기관에서의 당해 발명자의 직무내용을 기재할 것
 3. 직무발명의 성질 : 당해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것
- ③ 제1항 제2호의 직무발명의 요약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 제3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에 대한 국가승계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 (특허권의 등록요청)**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2. 특허사정서 또는 특허증 사본
 3. 기타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제5조 (국가기관의 무상실시)** ① 영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실시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무상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유서
- 제6조 (전용실시권등의 계약기간)** 특허청장이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당해 국유특허권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당해 국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로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시까지의 잔여기간

제7조 (처분의 공고) 특허청장은 영 제11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전까지 당해 국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의계약 신청) ① 영 제11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국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3. 영 제1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시설규모
 3.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제9조 (계약서의 작성) ① 특허청장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처분하는 국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의 규정

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 ② 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예정가격의 산정기준등) ① 국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 1. 국유특허권의 존속기간중의 실시료 추정총액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특허권의 매매실례가격
- ②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 국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 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③ 제2항의 산식에 규정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 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 2. 제품의 판매 단가: 실시기간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
- 3. 점유율: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당해 국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 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당해 국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참작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따로 특허청장이 정

하는 기준에 의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은 실시기간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 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제12조 (처분결과와 통지)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내용
- 2. 처분대금의 수납에 관한 사항
- 3.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3조 (대장의 작성·비치)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 이 규칙은 실용신안 및 의장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시행규칙 및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규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발특2003/7